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제목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지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회신

1. 관련 : 국민신문고 2011.4.1 접수

2. 주요 질의 내용

가. A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최초로 하여 승인받은 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던중 A사의 부도로 B사에 2010년 2월 인수되어 2010년 4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재차하였을 경우 2009.5.28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2항의 요율을 적용하는지?

나.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과오납되었다면 환급방법은?

다. 동법 제5조제4항제2호 “최근3년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에서 지역의 의미가 시(市)·도(道)지역을 의미하는지 시(時)·군(郡)·구(區)를 의미하는지?

3.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붙임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붙임 질의회신서 1부. 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무관	김근호	공업사무관	양현오	지방교육재정과 장	전결 04/11 김병규
-----	-----	-------	-----	--------------	-----------------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939 (2011. 04. 11.)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8624

전송 02-2100-6687

/ kh1@mest.go.kr

/ www.mest.go.kr

/ 대국민공개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학교용지부담금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요지

- 가. A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최초로 하여 승인받은 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던중 A사의 부도로 B사에 2010년 2월 인수되어 2010년 4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재차하였을 경우 2009.5.28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2항의 요율을 적용하는지?
- 나.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과오납되었다면 환급방법은?
- 다. 동법 제5조제4항제2호 “최근3년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서 지역의 의미가 시(市)·도(道)지역을 의미하는지 시(時)·군(郡)·구(區)를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 가. 새로운 요율에 따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2009.5.28)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진행 중에 회사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법시행일 이전에 분양 승인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은 종전요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징수 절차에는 환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환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환급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 부담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물리적 지역의 범위는 초등학교는 학구, 중·고등학교는 학군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학교의 신·증설을 검토할 때 위 지역을 단위로 하여 검토하기 때문입니다.